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47136 악보복제, 배포금지 청구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제윤, 박선우, 양예훈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이영욱
변 론 종 결 2026. 6. 9.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악보의 복제, 배포를 중지하고, 원본 파일 및 인쇄본을 폐기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라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의 작곡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중 일부 지분을 승계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오선보 악보를 정간보 형식으로 옮겨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정간보(이하 '이 사건 정간보'라 한다)를 수록한 해금 교본서인 'F'(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집필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10. 30. 피고 C과 해금 교본서의 출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간보가 수록된 이 사건 도서를 2015. 4. 1.부터 2020. 10. 27.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부 발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사단법인 G(이하 'G협회'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서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음악출판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5. 4. 13. 그 사용료로 100,750원을 납부하였고(승인번호: H), 이 사건 도서에 부착된 CD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20. 11. 10. 그 사용료로 118,580원을 납부하였다(승인번호: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48, 49,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11, 30, 3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¹⁾

1) 이 사건 정간보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오선보 악보를 정간보 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음계, 리듬 등 음악적 요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바, 피고 C이 원고 등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들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오선보 악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간보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고 B는 피고 C과 이 사건 도서의 출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정간보를 이 사건 도서에 수록하여 발행·배포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이 사건 도서는 여러 악보를 선택·배열하여 구성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 사건 도서의 소재로 이용하면서 원고 등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들로부터 편집저작물 작성에 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편집저작물 작성권도 침해하였다.

1)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도서 및 부속 CD의 제작·배포가 원고의 복제권·배포권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2026. 5. 12. 자 준비서면 제35면), 그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G협회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신탁계약약관에 의하면 복제권(악보출판 포함) 및 배포권은 G협회의 신탁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각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음악저작물 자체가 망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피고들이 망인 또는 원고 등 그 권리승계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5)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간보를 이 사건 도서에 수록하면서 원저작자인 망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그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된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28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정간보의 복제·배포의 중지와 그 원본 파일 및 인쇄본의 폐기를 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일부청구).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시중에 유통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오선보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에 따라 정간보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간보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정간보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G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3) 편집저작물의 보호대상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관한 창작성인바, 이 사건 도서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이 사건 도서의 소재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편집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 역시 독립된 권리로 인정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권리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

5) 망인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28조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이 사건 도서에 망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침해의 정지 또는 폐기를 구할 수도 없다.

6) 피고들은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이 사건 도서의 유통을 중지하고 이를 수거·폐기하였으며 향후 이를 다시 제작·출판할 계획도 없으므로 침해의 정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G협회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판단

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그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5조 제2항). 한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등 참조).

특히,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4, 99호증, 을 제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간보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음원과 이 사건 정간보에 따른 연주음원을 직접 청취·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특징짓는 가락이 전체적으로 동일하



게 유지되고 있고, 리듬과 음악적 진행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별개의 음악저작물로 인식될 정도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간보에 따른 연주에 해금이 사용됨에 따라 음색이나 연주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악기의 특성이나 연주방법에 따른 차이로 보일 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가락·리듬 등 창작적 표현 자체에 새로운 음악적 표현이 부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오선보와 정간보는 음악을 기보하는 체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기보방식의 차이 자체가 곧 그 기보된 음악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차적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선보상의 음표를 정간보상의 음명으로 표시하였다는 외형적·시각적 차이가 아니라, 그 결과 표현되는 음악의 가락·리듬 등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양음악에서 사용하는 음명·음계 체계와 국악에서 사용하는 음명 체계가 서로 다르거나 정간보의 기보형식이 오선보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간보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기보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현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주된 가락과 음악적 진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원고는 국악이 서양음악과 다른 음계·장단·연주체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선율이라도 국악적 표현방식에 따라 연주형태나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갑 제81 내지 92, 109, 110, 118 내지 122호증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그 근거로 든 위 증거들은 국악의 음계와 장단, 정간보의 기보체계 및 해금의 연주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들로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이 사건 정간보를 구



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 사건 정간보의 어떠한 가락·리듬 등 음악적 표현이 원저작물과 달라졌고 그 변경에 어떠한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지를 밝힌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즉, 국악 또는 정간보의 일반적인 특성상 새로운 음악적 표현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변경이 이 사건 정간보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오선보의 계이름과 정간보의 율명 사이에는 일정한 대응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양 기보법 사이를 변환하는 방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을 제6 내지 9호증 참조). 특히 정간보의 오선보 변환에 대한 연구에서는 실험대상 악곡의 음높이가 전부 일치하고 음길이 역시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따라서 오선보를 정간보로 변환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원곡의 음악적 표현을 창작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도서의 서문에 초보자의 연주를 위하여 일부 리듬이나 음정을 쉽게 바꾸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서에 수록된 여러 연습곡과 예제곡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보일 뿐,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특정 부분이 실제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도서에 피고 C이 '편'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 2015 C'이라는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도서 전체의 집필·편집에 관한 표시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이 사건 정간보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창작적인 편곡물로 작성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정간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음역의 조정, 일부 음의 생략 또는 단순화, 운지법·운궁법 등의 부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



고 주장과 같은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금의 음역이나 초보자의 연주 편의를 고려한 일부 조정 또는 운지·활 사용방법의 표시는 악기의 특성에 따른 연주상·교육상의 지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가락·리듬 등 음악적 표현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로 실질적으로 개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편집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로서(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편집물 중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특히 '편집저작물'이라 한다(같은 조 제18호).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저작권법 제6조 제1항), 그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도서가 이 사건 정간보를 비롯한 여러 악보 등을 소재로 선택·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나타난 창작성이고, 그와 별개로 편집저작물의 소재가 된 개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즉,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이용행위가 복제권 등 소재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편집저작물의 작성·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작성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이 사건 도서의 소재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편집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 자체가 망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망인을 식별하게 하는 인격적 표지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 사건 도서에 수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망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독점적·배타적인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성명·초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도서를 출판하면서 망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망인을 식별하기 위한 인격적 표지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도서에 망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성명 자체가 가지는 명성이나 고객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음악저작물은 그 저작자와 구별되는 저작물 자체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므로, 특정 음악저작물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 저작자를 연상시킨다는 사정만으로 그 음악저작물 자체를 저작자의 성명·초상·음성 등과 같은 인격적 표지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무단 이용되는 경우, 이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문제이지, 이와



별도로 망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저작인격권 내지 망인의 사후 인격적 이익 침해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인 망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여(저작권법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항), 망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128조는 그 유족에게 망인의 사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저작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저작물 이용행위가 단순히 망인이 생존 중이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정간보를 이 사건 도서에 수록하면서 망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도서의 표지 등에 피고 C이



'편'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내부에 '© 2015 C'이라는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표시는 이 사건 도서 전체의 집필·편집 및 그 출판물에 관한 표시로 보일 뿐, 피고 C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곡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간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음악저작물로 볼 정도의 창작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음역의 조정, 일부 음의 생략 또는 단순화, 운지법·운궁법 등의 표시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망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왜곡하거나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훼손·변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도서는 해금 초보자를 위한 교육용 교본으로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역시 연습·교육 목적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용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망인을 비방하거나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정간보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도서를 발행·배포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성명·경력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망인과 무관한 사람의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그 내용·형식을 망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왜곡된 방식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그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4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상수

판사 임성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4

[별지]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	

